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5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7.

발 의 자 : 조지연 · 김승수 · 김상훈
박준태 · 신동욱 · 서지영
김용태 · 한지아 · 이종욱
김장겸 · 김대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은 초등·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6인을,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7인을 기준으로 하고, 이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고 있음.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초등·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4인으로,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5인으로 낮춤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).

법률 제 호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제2호 중 “6인”을 각각 “4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7인”을 각각 “5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)	제27조(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)
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초등학교·중학교 과정의 경우 :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<u>6인</u>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, <u>6인</u> 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.	2. ----- ----- --- <u>4인</u> ----- ----- <u>4인</u> ----- ----- -.
3.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: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<u>7인</u>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, <u>7인</u> 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.	3. ----- ----- <u>5인</u> ----- ----- --- <u>5인</u> ----- 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